

보도시점 : 2023. 11. 15.(수) 11:00 이후(11. 16.(목) 조간) / 배포 : 2023. 11. 15.(수)

측량업계 규제 완화한다 ... 16일부터 대체과징금제도 시행

- 16일부터 공간정보관리법 개정안 시행... 영세 측량업자의 폐업방지 등 민생안정 기대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1월 16일(목)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2년에 도입한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제도의 후속 조치로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측량업체가 법령(공간정보관리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였다.
- 법령상 14개 위반행위 중 경고, 등록취소를 제외하고 8개 위반행위를 한 측량업체는 최소 1개월~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 세부 사항은 참고 첨부)
- 과징금은 영업정지 1개월당 400만원으로 설정되었으며, 중한 위반행위 시 부과되는 가산금(1/2범위)을 고려하면 최고 3,6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영세한 측량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할 납부* 또는 납부기한을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총 3회에 걸쳐 2개월 간격으로 분할 납부 가능
(예시) '23.11월 납부기한 연기를 한 경우 → 1회1월 → 2회3월 → 3회5월
- 또한,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위반행위 중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혜 범위를 넓혔다.

-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시행을 통해 영세한 측량업체의 영업정지에 따른 폐업 위기를 방지하는 등 민생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담당 부서	공간정보제도과 법령제도팀	책임자	과 장	유상철 (044-201-3478)
		담당자	사무관	정은정 (044-201-3480)



참고

영업정지 처분기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별표 9)

□ 위반행위별 영업정지 기간 및 과징금 금액

위 반 행 위	근 거 법 조 문	1 차		2 차		3 차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처분 기준	과징금 금액
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가) 고의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나)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호	등록 취소 영업 정지 4개월	해당 없음 1천6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2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3호	경고	해당 없음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4)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 제4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5)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45조의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지적 측량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6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6) 법 제4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 같은 조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52조제1항 제7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7) 법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 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8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8)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50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9호	영업 정지 1개월	4백만원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등록 취소 또는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영업 정지의 경우)	
9) 법 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0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0)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1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1)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2호	영업 정지 2개월	8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2) 지적측량업자가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고시한 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3호	영업 정지 3개월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등록 취소	해당 없음	
13)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가) 등록취소를 요구한 경우 나)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4호	등록 취소 영업 정지 3개월	해당 없음 1천2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6개월	2천4백만원 2천4백만원	영업 정지 6개월	2천4백만원	
14)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법 제52조제1항 제15호	등록 취소	해당 없음					

* 이번 개정 내용은 남색 표기